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8064 판결 [건물명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승용, 곽탁영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24. 6. 13.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석

별지